近世仏教の成立と檀家制度

圭室文雄*

目 次

はじめに
1. 寺院法度
2. 本末制度
3. 檀家制度
4. 幕府宗教行政の轉換と寺側の對応

はじめに

今回は近世仏教の成立というテーマで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大きく分けて四つの内容を考えています。

第1は寺院法度です。これは徳川家康が寺院を統制する目的で定めたものです。

第2は本末制度です。これは幕府が寺院法度の中で各宗の本寺をきめ、その本寺の下にそれぞれの宗派の寺を末寺として編成したものです。内容は教団の統制を意味しており、寺院内部の階級關係を作り出したものです。

第3は檀家制度です。キリシタン彈壓を目的として作られた制度で、寺院による檀家の支配關係です。

第4は幕府宗教行政の轉換と寺側の對応です。幕府はこれまでキリシタン彈壓のため寺院保護政策をとってきましたが、檀家に對する寺の力がきわめて強くなったためこの段階で、檀家を保護する政策に轉換しました。一方寺院側は葬式法要を軸として民衆の統制をは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 日本 明治大学 名誉教授

1. 寺院法度

第1表 寺院法度

	西暦	月	日	宛先宗派·寺院名	国名	県名	宗派名	条数	法度布達者
1	1601	5	21	高野山	紀伊	和歌山	真言宗	5	徳川家康
2	1602	6	2	大樹寺	三河	静岡	浄土宗	5	徳川家康
3	1608	8	8	比叡山	近江	滋賀	天台宗	7	徳川家康
4	1608	10	4	成菩提院	〃	〃	〃	7	徳川家康
5	1609	5	1	園城寺	〃	〃	〃		徳川秀忠
6	1609	5	1	聖護院	山城	京都	〃		徳川秀忠
7	1609	8	28	東寺	〃	〃	真言宗	3	徳川家康
8	1609	8	28	醍醐寺	〃	〃	〃	3	徳川家康
9	1609	8	28	高野山衆徒	紀伊	和歌山	〃	3	徳川家康
10	1609	8	28	関東古義真言宗			〃	9	徳川家康
11	1609	8	29	大山寺	相模	神奈川	〃	3	徳川家康
12	1609	11	21	東寺	山城	京都	〃		徳川秀忠
13	1609	11	21	高野山衆徒	紀伊	和歌山	〃		徳川秀忠
14	1610	閏2	21	石山寺	近江	滋賀	〃	5	板倉勝重·円光寺元佶
15	1610	4	20	金剛峰寺	紀伊	和歌山	〃	5	徳川家康
16	1610	5	1	戸隠山	信濃	長野	天台宗	5	徳川家康
17	1610	9	27	興福寺	大和	奈良		3	徳川家康
18	1610	10	5	長谷寺	〃	〃	真言宗	3	徳川家康
19	1613	2	28	関東天台宗(喜多院)	武蔵	埼玉	天台宗	8	徳川家康
20	1613	2	28	〃	〃	〃	〃	7	徳川秀忠
21	1613	2	28	慈恩寺	〃	〃	〃	3	徳川家康
22	1613	2	28	中道院	〃	〃	〃	3	徳川家康
23	1613	2	28	千妙寺	常陸	茨城	〃	3	徳川家康
24	1613	2	28	薬王院	〃	〃	〃	3	徳川家康
25	1613	3	13	浅草寺	武蔵	東京	〃	3	徳川家康
26	1613	4	10	智積院	山城	京都	真言宗	5	徳川家康
27	1613	5	21	聖護院	〃	〃	天台宗		徳川家康
28	1613	5	21	三宝院	〃	〃	真言宗		徳川家康
29	1613	6	6	聖護院	〃	〃	天台宗		徳川家康
30	1613	6	6	三宝院	〃	〃	真言宗		徳川家康
31	1613	6	6	関東新義真言宗			〃	5	徳川家康
32	1613	6	6	〃			〃	5	徳川秀忠
33	1613	6	16	七大寺入院法度					徳川家康
34	1613	6	16	公家衆法度				5	徳川家康
35	1613	8	26	関東天台宗(喜多院)	武蔵	埼玉	天台宗	7	徳川家康
36	1614	3	13	大山寺西楽院	伯耆	鳥取	〃	5	徳川秀忠
37	1614	9	5	榛名山巌殿寺	上野	群馬	〃	3	徳川家康
38	1615	7	17	禁中並公家諸法度				17	徳川家康
39	1615	7		五山十刹諸法度			臨済宗	7	徳川家康

40	1615	7		大徳寺	山城	京都	〃	5	徳川家康
41	1615	7		妙心寺	〃	〃	〃	5	徳川家康
42	1615	7		真言宗			真言宗	10	徳川家康
43	1615	7		高野山衆徒	紀伊	和歌山	〃	5	徳川家康
44	1615	7		永平寺	越前	福井	曹洞宗	5	徳川家康
45	1615	7		總持寺	能登	石川	〃	5	徳川家康
46	1615	7		浄土宗			浄土宗	35	徳川家康
47	1615	7		浄土宗西山派			〃	9	徳川家康

注：出典は中村孝也『徳川家康文書の研究』

この表で明らかなように、幾つかのことが指摘できます。

① 寺院法度が出されたのは、關が原の役の翌年の1601年から1615年の15年間にわたって出されています。

② もう少し細かく見てみますと、1608年～1615年の8年間に集中しています。

③ 實はこの時期、關が原の戰いに敗れた豊臣秀頼（大坂方）が徳川家康に對抗するため畿内の有力寺院の再建・復興に積極的になり、大坂方としては有力寺院の僧兵の軍事力の動員に期待していた向きがあります。これに對して、徳川方としてはこのような動きを封じる必要がありました。

④ もう少し詳しく寺院法度の表を見てみますと、寺院法度が出された有力寺院が存在する地域は、畿内と幕府の膝元の關東にほぼ限定されます。

⑤ 寺院法度の宛先をみてみますと、最初は大寺院を單位としていますが、時代が下がるにつれてそれぞれの宗派單位の統制へと変わっていきます。

⑥ 寺院法度のあて先を宗派單位でみますと、天台宗・眞言宗が最も多く、とくに天台宗では比叡山延暦寺・關東本寺の喜多院・千妙寺、天台修驗（本山派）の中心の聖護院、眞言宗では高野山金剛峰寺をはじめ東寺・長谷寺・智積院・醍醐寺と眞言修驗（当山派）の中心の三宝院などを統制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⑦ この時期、出された寺院法度の箇條數をみますと、1615年浄土宗諸法度35か條が最も多く、次いで禁中並公家諸法度17か條です。それ以外の多くの寺院法度は3～5か條程度のものが多いようです。

⑧ 寺院法度を布達したのは徳川家康が最も多いことが法度布達者の項目で指摘できます。

⑨ 1615年7月に寺院法度の布達が集中しているのは、この年豊臣秀頼を滅ぼし徳川氏が覇權を握り、このことから多くの宗派に統制が及んだと考えられます。

a　中世的特權の剝奪

寺院が中世にもっていた特權は幾つかありますが、一つは膨大な寺領です。主として外護者（スポンサー）である領主から与えられたものでしたが、大寺はさらに多くの寺領（田畑や山林）を集め、これを貸し付けて収入を得ていました。

もう一つの大きな特權は、「守護不入權」（Asyl）です。これは寺院が領主の境內への立ち入りを拒否する權利であり、公的權力が及ば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寺院の境內は本來僧侶の修行の場であることから、世俗との關係を絶つことがその趣旨である、というわけです。ところで、時代がさがるにしたがって寺院側は境內のみではなく、寺領へも守護不入權を擴大していきました。このため犯罪人・浮浪人がいつでもに入り込むようになり、その罪を逃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ことから中世の領主と寺院がたびたび爭論をおこしています。例えば、比叡山や高野山には戰亂に敗れた落ち武者達がしばしば入りこみ、追手から逃れたことは有名です。

また一方で大寺院は僧兵を數多く抱えており、政治權力と對決することもたびたびのことでした。多くの戰國大名も對抗できず、織田信長・豊臣秀吉・德川家康などの全國を統一した權力者たちも大寺院と對立抗爭を繰り廣げています。彼らはこのような事態を一掃するために檢地や刀狩を寺院にも適用し、寺領を削減するとともに守護不入權を廢止し、政治權力の統制に服從させるとともに、數万の軍勢（僧兵）をかかえている大寺院の僧兵を解散させ、武器をとりあげました。

寺院法度は大寺といえども幕藩權力の支配下に置くことを明確にしました。

b　各宗派本寺と触頭寺院の決定

德川家康は大寺院の軍事力・經濟力を削減するとともに、本寺（本山）を各宗派それぞれ複數にして、その宗教的權力が一つの本山に集中することを排除しました。また各宗とも本山が地方にある場合は關東にも本山を新設し、關東本寺として同等の權利を与えました。各宗の本山の下には触頭寺院をきめています。触頭寺院とは幕府の法令を宗派內の寺院に通達する寺院のことです。宗派によっては触頭寺院が江戸にない場合に、その末寺で江戸にある寺院に触頭寺院の住職が常駐している場合もあります。

各宗の本山は先に見たように政治的・經濟的・軍事的などのこれまで持っていた權限をほぼ取り上げられ、教學道場としてのみ再生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そのことにより幕府權力を背景に持つ触頭寺院の方が、その宗派の本山より宗派內では政治力を持つことになりました。

c　僧侶の昇格制度

寺院法度では各宗派の寺院の住職には僧侶の資格を厳しく規定しています。宗派ごとの若干の差はありますが毎年夏と冬に90日間ずつ、合計180日間、本山かそれぞれの地域の有力寺院で修學・修行することを義務づけています。このような修學・修行を25年～30年間續け、試驗に合格すると初めて住職の資格が与えられます。その後も修學を怠らず、毎年180日間修學しますと、僧階（僧侶の階級）が上昇します。その僧階に相当する寺格の高い寺に移轉していきます。そして最高の榮譽として各宗派の本山住職一人だけが、紫色の衣を着ることが出來ます。これは將軍の承認を得て天皇から下賜されるものでした。これに對して、本山住職の次の位は黃衣（黃色の衣）を着ることが許され、伝奏家である公家から渡されました。しかし時代が下がるにしたがって黃衣以下は賣官制になりました。僧侶の位は上位の僧階は天皇家が、次いで伝奏家の公家が、更に低い僧階は門跡寺院が賣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結果天皇や京都の公家・門跡寺院は経濟的に莫大な收入をうることになりました。また京都の町には僧階を求める多くの僧侶の姿が數多く見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京都西陣の衣屋は様々な色の衣を作り、賣却し隆盛をきわめておりました。明治2年（1869）になり天皇が東京へ移ってからは、この制度は廢止されました。京都の公家や門跡寺院、さらには町人の経濟は大きな打撃を受けました。

d　民間宗教者の締め出し

寺院法度が制定され、各宗本山・触頭が決まり宗派組織が確立すると、中世以來沙弥とか聖とか山伏とかいわれた寺を持たない民間宗教者たちは仏教教団から排除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例えば、「淨土宗諸法度」35か條の中で幾つかを拾い出してその様子を探って見ましょう。

①新寺の建立を厳しく禁止しています。

②俗人の家を借り仏壇を置いて寺院に準ずるようなことは禁止しています。

③廻國や遊行の修行僧がその地域の大名の許し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輕々しく布教をしてはいけないとしています。

④僧侶の資格を持たない仏道修行者の身で、人々に對して十念を授けたり、本來は僧侶が師弟關係をむすぶ血脈を授けたりすることは絶對に許してはいけないとしています。

つまり先に述べたように30年近くの厳格な修學・修行をして僧侶の資格を取った者と民間宗教者の違いを強調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e　寺院法度の特色

寺院法度についてはこれまでも各宗派内の對立抗爭の時や徳川家康が

寺領を与える時に布達してきましたが、各宗本山に對してほぼ同じような内容で布達したのは1615年7月が初めてのことでした。大坂の陣が終わり、まず徳川家康が手をつけたのは有力寺院を統制することでした。法度の起草者として南禪寺の金地院崇伝を起用しました。

この時幕府が寺院法度を出したのは五山十刹諸山法度7か條、大德寺諸法度5か條、妙心寺諸法度5か條、眞言宗諸法度10か條、高野山衆徒法度5か條、永平寺諸法度5か條、總持寺諸法度5か條、淨土宗諸法度35か條、淨土宗西山派諸法度9か條です。これ以外の宗派ではすでに天台宗は1608年に比叡山法度7か條、1613年關東天台宗諸法度8か條が出されています。しかし1615の段階までには一向宗・時宗・日蓮宗には法度は出されていません。

1615年7月の寺院法度の内容で共通するのは各宗本山の權限を强化したこと、教學を中心とする教団組織を成立させたこと、僧位・僧官の昇格を嚴格にしたこと、守護不入權などの中世寺院がもっていた特權を排除したこと等です。

しかし一方で五山十刹諸山諸法度の中で、「南禪寺は深紫衣、天龍寺は淺紫衣、そのほか京都・鎌倉の五山は黃衣」と規定し、深紫衣は臨濟宗南禪寺のみとし、全宗派の中で最も高い寺格の寺としています。他宗の本山住職にも紫衣が与えられましたが、これは天龍寺に準ずるとし、淺紫衣しか使用を認めていません。また五山派の京都五山・鎌倉五山の寺は黃衣とし、その階級差別を明確にしました。以上のように寺院法度により、臨濟宗の五山・十刹・諸山が江戸時代においても官寺的性格を持ち、その頂点が南禪寺であることを强調しています。

f　寺院法度の効果と限界

寺院法度の制定により仏教各宗派は幕府の組織下に組み入れられることになり、各宗派の教団獨自の動きは極力押さえつけられ、教団内部の階級關係も明確にされました。また教団内の紛爭も幕府の手により解決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一方このとき寺院法度のあて先になった大寺が各宗の本山となり、教団内部でこの寺を頂点とする組織化がはかられました。幕府權力に抵抗する宗教は徹底的に彈壓され、寺院が中世以來持っていた守護不入權は否定され、大寺院が持っていた多くの田畑山林は檢地により大半が剝奪されました。力を失った寺院は幕府の下僕として存在することがゆるされました。

尙この段階における寺院法度の限界も指摘しておきますと、第1に寺院法度の案文が各宗本山住職から提出され、金地院崇伝がこれに加筆訂正を加え、將軍がそれを布達する形式を取ったため末寺にたいする本山側の要求のみが盛り込ま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第2にはいずれも宗派單

位の法度となっており、仏教全宗派寺院への統一した法度の内容ではなく、幕府が全宗派に對して同一内容の法度をだすのは50年後の1665年のことです。第3に宗派組織が万全でなかった日蓮宗・一向宗・時宗にはこの段階までは法度は出されていません。第4に、法度起草者の金地院崇伝が僧侶であったことから徹底した處罰を伴う法令とはなっていません。第5に、先に述べたように南禪寺の地位が全國寺院の頂点になった事なども注目すべきことと思います。

2. 本末制度

a　法令にみる本末制度

本末制度とは寺院の本山と末寺の關係を階級制度化したものです。寺院法度の中で本末制度に關する記事を拾ってみますと、

> 諸末寺は本寺の法度に違背してはいけない事（1612年5月28日「曹洞宗法度」）
>
> 末寺として本寺の下知に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事（1613年2月28日「關東天台宗諸法度」）
>
> 本寺の許可を得ないで、末寺に居住してはいけない事（1613年5月21日「關東新義眞言宗法度」」
>
> 日本曹洞宗の末寺は、これまでのように宗祖の教え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事　（1615年7月「永平寺諸法度」）
>
> 毎年行われる開山・二代忌の法要に、加賀（石川縣）・能登（石川縣）・越中（富山縣）の三か國の諸末寺は必ず本山へお參りする事（1615年7月「總持寺諸法度」）

と、本寺の權限が强化されている様子がわかります。例えば本寺からの法度・下知（命令）・家訓（宗内の掟）などが絶對である事とし、特に本山が末寺の住職の人事權をもち、更に本山の開山忌・二代忌などのおりには末寺は殘らず本山に集まって法要に參加するように强制している様子もわかり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本山の意向を强調するためには、本山と末寺の階級關係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その理由が寺院本末帳の作成でした。

b　寺院本末帳の作成

全國的に本山を頂点とする寺院本末帳が作成されたのは1632年～1633年のことでした。この時期の幕府側にのこる寺院本末帳は現在國立公文書館内閣文庫に殘っています。次にその内容を表にして掲げてみましょう。

第2表　1632年~1633年　諸宗寺院本末帳目録

	年号	月	日	書名	宗派	冊数
1	1632	9	5	五山之目録	臨済宗	1
2	1632	11	9	浄土宗諸寺之帳	浄土宗	1
3	1632	11	9	浄土宗増上寺末寺帳	浄土宗	1
4	1632	11	24	常陸之正宗寺末寺書上	臨済宗	1
5	1633	1	19	法花宗諸寺目録	日蓮宗	1
6	1633	1	28	本隆寺之帳	日蓮宗	1
7	1633	2	11	京都本国寺末寺帳	日蓮宗	1
8	1633	2	20	遠州奥山方広寺輪番所本末帳	臨済宗	1
9	1633	2	21	鎌倉宝戒寺末寺書上	天台宗	1
10	1633	2	21	三州嵩山正宗寺末寺帳	臨済宗	1
11	1633	2		関東真言宗古義本末帳	真言宗	1
12	1633	3	1	時宗藤沢遊行末寺帳	時宗	1
13	1633	3	12	北京泉涌寺本末帳	真言律宗	1
14	1633	3	14	正法山妙心禅寺末寺並末々帳	臨済宗	1
15	1633	5	2	相州宝泉寺帳	曹洞宗	1
16	1633	5	16	関東真言宗新義本末帳	真言宗	1
17	1633	5	16	〃	真言宗	1
18	1633	5		曹洞宗通幻派本末記上	曹洞宗	1
19	1633	5		〃　下	曹洞宗	1
20	1633	5		竜穏寺本末帳	曹洞宗	1
21	1633	6	12	相州鎌倉建長寺末寺帳	臨済宗	1
22	1633	6	12	鎌倉寿福・浄智・浄妙末寺帳	臨済宗	1
23	1633	11	26	寂光寺末寺記録	日蓮宗	1
24	1633	11	28	京本満寺末寺帳	日蓮宗	1
25	1633	11	28	妙満寺末寺帳	日蓮宗	1
26	1633	11	28	上京妙覚寺諸末寺覚	日蓮宗	1
27	1633	11	28	京頂妙寺末寺帳	日蓮宗	1
28	1633	11		洛陽法華宗本禅寺末寺帳	日蓮宗	1
29	1633	11		洛陽本能寺末寺帳	日蓮宗	1
30	1633	12	1	京妙顕寺末寺帳	日蓮宗	1
31	1633	12	1	京妙法寺末寺帳	日蓮宗	1
32	1633	12	3	洛陽二条寺町要法寺末寺帳	日蓮宗	1
33	1633	12		立本寺諸末寺之帳	日蓮宗	1
34	1633			武州竜淵寺帳	曹洞宗	1
35		10	1	妙泉寺寺領書付	日蓮宗	1
36		11		寿福寺御寄進領並末寺書立	臨済宗	1
37				中峯派水戸之内清音寺末寺書上	臨済宗	1
38				五山出世之様子書物	臨済宗	1
39				曹洞宗末寺帳(遠江・駿河・三河・伊豆)	曹洞宗	1
40				遠州曹洞宗小末寺帳	曹洞宗	1
41				駿州曹洞宗小末寺帳	曹洞宗	1
42				妙蓮寺末寺帳	日蓮宗	1
43				京本法寺末寺帳	日蓮宗	1
44	1684	5	25	入目録上（寛永之諸宗末寺帳目録）		1
45	1684	5	25	入目録下（　〃　）		1

注　史料は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所蔵

表で明らかなように、寛永の「諸宗末寺帳」といわれるのは、No１～No43までです。No 44とNo45は後年の1684年に作成された「寛永諸宗末寺帳」の目錄ですので、全体で43冊となります。

この表で氣がつくことは1632年に本山から幕府に提出されたのは淨土宗2冊と臨濟宗2冊の計4冊にすぎません。そしてそのいずれもが9月以降です。これに對して多くの本末帳は1633年に提出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1633年と年号が付されているのは30冊、月のみ記載されているのは2冊、年月日すべてしるされていないのは7冊ですが、これも記載形式からみますと1633年に含めていいと思われますので、これを加えると1633年分は合計39冊となります。これは全体の約91％にあたります。

つぎに宗派ごとの冊數をみてみますと、合計43冊の内日蓮宗の17冊が斷然多く、次いで臨濟宗10冊、曹洞宗8冊、眞言宗・眞言宗律宗4冊、淨土宗2冊、天台宗と時宗はそれぞれ１冊です。

日蓮宗がとりわけ多いのは、1630年宗内を二分する論爭が展開されたからです。これを身池對論（しんちたいろん）とよんでいます。「身」とは山梨縣の身延山久遠寺のことであり、「池」とは東京都の池上本門寺をさします。日蓮宗の兩本山が、將軍德川秀忠夫人の崇源院の葬式法要が東京都の芝にある淨土宗增上寺で行われるのに參加することの是非を、江戸幕府老中を前に對論しました。久遠寺は參加すべきとしたのに對して、本門寺は參加す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その論旨は、「宗祖日蓮は法華経の信者でない者に對しては、例え國主であっても、不受不施を貫くべきと主張している」としました。不受不施とは「施しもしないし施しも受けない」とする考えです。論爭に負けた日蓮宗不受不施派本門寺住職日樹は伊那（長野縣）に追放されました。その後幕府はキリスト教と同樣に日蓮宗不受不施派を禁止しました。その2～3年後の本末帳提出なので、幕府は日蓮宗については不受不施派寺院やその僧侶の書上を命じ、徹底的に追跡をしました。このような背景が日蓮宗本末帳の多さにつながっています。特に京都の日蓮宗寺院の内、妙覺寺が不受不施派の據点であったため京都の本末帳が多く作成されています。

一方で、身延山久遠寺はこの機會に全國の總本山の地位を確固たるものにしました。

このときの本末帳で大きな宗派で現在史料が殘っていないのは一向宗です。なおまた天台宗もわずか4か寺のみの書上であり、大半は未提出の狀態です。

次に寺院本末帳にみる宗派單位の分布をみ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の表は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所藏の諸宗末寺帳43冊を集計したものです。この帳面に記載されている寺院の總數は12080か寺です。次に表について說明します。

第3表 寺院本末帳にみる宗派単位の分布

	宗派	九州	四国	中国	近畿	北陸	東海中部	関東	東北	松前	不記	不詳	合計	%
1	天台宗							4					4	0.03
2	古義真言宗						57	871					928	7.68
3	新義真言宗					276	30	2325	69				2700	22.35
4	真言律宗				12		1	4					17	0.1
5	浄土宗						1	451	45		91	13	601	4.98
6	時宗	15	1	10	18	24	42	130	35				275	2.28
7	臨済宗	57	23	80	76	38	918	557	4		167		1920	15.89
8	曹洞宗			1	5	1	1207	2089	54		12	2	3371	27.91
9	日蓮宗	60	20	284	256	302	464	841	20	4		13	2264	18.74
	合計	132	44	375	367	641	2720	7272	227	4	270	28	12080	
	%	1.09	0.36	3.1	3.04	5.31	22.52	60.2	1.88	0.03	2.24	0.23		

注 史料は寛永9～10年（1632～1633）『諸宗寺院本末帳』（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所蔵）

第一に宗派ごとに検討してみますと、このとき本末帳が作成されたのは天台宗・古義眞言宗・新義眞言宗・眞言律宗・浄土宗・時宗・臨濟宗・曹洞宗・日蓮宗の9つの宗派です。この寺院數が当時存在した寺院數の何分の一かははっきりしませんが、例えば曹洞宗の場合1747年の「寺院本末帳」に比較すると、寛永の諸宗末寺帳に記載されている寺院數は19％にすぎません。しかしともかく幕府側の史料で1630年代までたどれるのは現在のところこれだけです。この段階で本末帳を提出していない主な宗派の一つは一向宗です。蓮如以來北陸・東海・畿内に勢力を伸ばしていたことを考えると一向宗のみでも全体の12080か寺をはるかに上回る數字と思われます。また4か寺のみ記されている天台宗の場合も1786年「天台宗本末帳」によれば約10000か寺の末寺を抱えています。これらのことから寛永の諸宗末寺帳の限界はありますが、宗派別に若干の検討をしたいと思います。

まず天台宗では鎌倉の宝戒寺が提出したもので、相模國の末寺3か寺を書上げています。天台宗の本山格である比叡山延暦寺や關東の本山である川越の喜多院などから提出されたものは殘っていません。

古義眞言宗は928か寺で、現存するものは關東・東海地方の寺院のみしか記載がありません。

新義眞言宗は寺院總數2700か寺が記載されていますが、これもまた「關東眞言宗新義本末帳」と表題にあるように、記載されている寺院の分布地域は關東が中心で、北陸・東北・東海の順になっています。

眞言律宗については京都泉涌寺のみで、わずか17か寺にすぎません。

浄土宗は「浄土宗諸寺之帳」と「浄土宗增上寺末寺帳」の2冊ですが、その内容は表題のように關東の記載が中心です。

時宗は「時宗藤澤遊行末寺帳」1冊のみで、時宗12派の内遊行派のみの

書上です。しかしその末寺は全國39か國に分布しています。

臨濟宗は鎌倉建長寺・京都妙心寺・遠江方廣寺・三河正宗寺・五山十刹諸山・常陸正宗寺・常陸清音寺・鎌倉壽福寺・淨智寺・淨妙寺などの本末帳です。この表でみる限り臨濟宗の教線は全國的な廣がりをみせていますが、これは妙心寺の末寺が49か國に分布し、また數は少ないですが五山・十刹・諸山が60か國に分布しているためです。

曹洞宗の末寺は陸奥國に54か寺ほど存在しますが表に見る如く東海・中部・關東に集中しています。

日蓮宗は京都16本山がすべて本末帳を提出しているため、畿内並びにその周辺の地域にも分布していますが、やはり多いのは關東です。

つぎに全宗派を地域的にみますと、寺院數が最も多い地域は關東地方で、全体の60.2％をしめます。第2位は東海地方で全体の22.52％をしめます。この二地域を合わせますと約83％に達します。このことから考えますと寛永の本末帳は江戸を中心としたこの二地域の本寺格の寺院が本末帳の提出に応じ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その意味では全國的に各宗派を通じて分析することは出來ません。

3. 檀家制度

檀家制度とは、寺の経營を檀家がささえる制度です。日本人全員が仏教徒として寺の檀家に編入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は1640年～1660年頃のことです。私は檀家制度が成立するまでには、四つぐらいの段階があったと考えています。

a　第1段階は1550年頃です。實は我々の先祖たちはすでに1500年頃から伊勢參宮にでかけていた記錄が殘っています。伊勢參宮へは同一村落の仲間や知人たちと同行しています。人々は伊勢參宮が終わるとその後高野山や奈良・京都・大坂へ足を伸ばし、名所旧跡を見學しています。とくに高野山では山上の伽藍や奥の院へ參詣し、宿坊に泊まっています。そして宿坊では朝の勤行の折兩親や近親者の菩提を供養しています。高野山の宿坊には当時泊まった人の宿帳（登山帳）と菩提供養をした時の記錄「日牌・月牌帳」（にっぱい・がっぱいちょう）が殘されています。そこには庶民の戒名（法名）・姓氏名・現住所・參詣者との續柄などが詳しく書かれています。特に庶民の戒名が頻出するのは1550年～1570年頃からです。この時期の戒名は宗派を問わず「二字戒名」です。このことから我々の先祖は寺とのつながりがあり、寺の住職から戒名をつけてもら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す。檀家制度というほど

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緩やかな寺と檀家の關係がすでに成立していたといえます。そして伊勢參宮のおり近親者の戒名を位牌から書き寫して持參し、高野山で供養をしてもらったと考えられます。またこの日牌・月牌帳からみますと我々の先祖の多くの人がすでに1550年代にはほとんどの人が苗字（みょうじ）をもっ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してくれます。このような史料は高野山の宿坊（塔頭）には澤山殘っています。以上のことから我々の先祖たちが寺で葬式を行い、住職に戒名をつけてもらい、寺と檀家の關係を結んだのは1550年頃から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

b　第2段階は1614年です。實は前年の1613年12月將軍德川秀忠は突然「伴天連追放令」（ばてれんついほうれい）を布達します。そして翌年1月には全國の大名に命じて領內のキリシタンを捕らえ、仏教に改宗させ、「轉吉利支丹寺請証文」（ころびキリシタンてらうけしょうもん）を書くことを義務づけ、近所の寺院の檀家になることを强制しました。つまりこの段階でキリシタンは寺院の寺請証文をもらい、その寺の檀家にならなければ、身分が保証されませんでした。次に九州の小倉藩で實際に提出された「轉吉利支丹寺請証文」を紹介してみましょう。小倉藩（豊前國8郡と豊後國2郡＝福岡縣の一部と大分縣の一部）はこの時約40万石の石高を持ち、藩主は細川忠興でした。

「轉吉利支丹寺請証文」には三つの形式があります。第1は轉吉利支丹本人の証文、第2は村役人の証文、第3は寺の住職の証文です。次にそれぞれの証文について說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資料　1

慶長一九年（一六一四）　小倉藩轉吉利支丹寺請証文

①　轉吉利支丹本人の証文の形式

今度はてれん門徒御改ニ付而、ころひ申候て、卽一向宗ニ罷成正行寺へ參申候、ころひ申上候は少も僞不申上候、其上請人別紙ニ立申候間、於相違仕者御法度ニ可被仰付候、仍爲堅如件、

慶長十九年二月廿二日

嶋田村　　五右衛門（花押）

蘆田与兵衛殿

魚住万五郎殿

（松井家文書　熊本大學図書館所藏）

資料　2

②　村役人の証文の形式

嶋田村五右衛門はてれんもんところひ申候テ、卽一向宗ニ罷成、正行寺へ參り申候、爲堅ニ我等請人罷立候、以來於相違仕ハ御法度ニ可被仰付候、爲後日一筆如件、

慶長十九年二月廿二日

嶋田村五右衛門請人

同村の頭百姓　久三郎（黒印）

惣庄屋　蠟瀬新五兵衛（花押）

蘆田与兵衛殿

魚住万五郎殿

（松井家文書　熊本大學図書館所藏）

資料　3

③　寺の住職の証文の形式

天罰起請文前書之事

今度伴天連門徒御改ニ付而

淺見村　　兵吉

浜脇村　　新十郎

今迄きりしたんにて御座候つれ共、今月九日より我等宗旨に罷成候、此者之儀向後迄我等請人ニ立申、若相違之儀御座候と、わき口より立御耳ニ候者、拙者ヲ可被成御成敗候、其上梵天・帝釋天・四大天王、惣而日本國中六十余州大小之神祇冥道、伊豆箱根兩社權現、三嶋大明神、別而当國之惣廟由原八幡大菩薩、祇園牛頭天王、關六所大權現並英彦山三大權現、別而ハ淺見八幡大菩薩、殊ニ奉頼釋迦牟尼如來、達磨尊師諸之請御救ヲ、部類眷屬神罰冥罰各々於身ニ罷蒙、今生ニては、白癩黒癩之身ト成、後生ニてハ無間地獄ニ墮罪シ、浮世更ニ不可有之者也、依天罰起請文如件

慶長十九年三月九日

浜脇村　宗福寺　玄香（花押）

田村三右衛殿

田仲角兵衛殿

（松井家文書　熊本大學図書館所藏）

資料1の本人の証文は嶋田村五右衛門本人が、これまではキリシタンであったが、今回の宗門改めによりキリシタンを轉び一向宗正行寺の檀家になったこと、これは僞りではないこと、そのため請け人（保証人）を立てて別紙で私の身分を保証してもら

うこと、もしキリシタンに立ち返えった場合はいかなる處罰も受けること、これらの事を誓約する文章の形式をとっています。宛先は小倉藩の役人です。

資料2の村役人の証文は①の史料で別紙とあったものです。文章の内容はほぼ同じですが、この村の頭百姓（かしらびゃくしょう）久三郎と惣庄屋（そうじょうや）蠣瀬新五兵衛の2名が五右衛門の身分を保証している様子がわかります。宛先は同様です。

資料3は寺の住職の証文の形式です。豊後國速見郡淺見村兵吉と浜脇村新十郎がキリシタンをやめて2月9日、浜脇村の宗福寺の檀家になったこと、この2名の者については宗福寺住職玄香がその身分を保証すること、もしほかからこの2名がキリシタンだと言う者がいたら住職を處罰してほしいこと、その後半に起請文をつけて神仏に誓う形式をとっています。宛先は小倉藩の役人です。

以上のように小倉藩は領内の轉吉利支丹1人ひとりについて3通の証文を作成しています。この時小倉藩で捕らえられたキリシタンは2047人と記錄されています。同様の証文は全國各地で作成したと思われますが、ほとんど現存しません。一方このようなキリシタン彈壓を目撃したまわりの人々も身分保証をするのは寺の住職であることが明白に分かり、キリシタン以外の多くの人々も自分の身を守るために寺と檀家の繋がりを持つことになりました。

c　第3段階は1635年頃からのことです。幕府はこの年に寺社奉行を新設し、本格的に宗教統制をはじめました。この時期から全國各地でキリシタンでない者に對しても寺請証文が作成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京都の南禪寺門前の証文の例をみてみます。

資料　4

南禪寺西門前住人吉利支丹改請狀

仰せ付けらる御法度書覺

一、南蛮人之伴天連之事

一、日本伴天連、付いるま之事

一、切したん之宗旨之事

右之宗旨之者これあるにおいては、急度申上ぐべく候、

一、きりしたん幷伴天連之宗旨を守者これあるにおいては、父母女子たりと云共、急度申上ぐべく候、其外一類中、付御被官中ニも、一人も御座なく候、よって後日のための狀、件の如し、

寛永十二乙亥年十月十三日

南禪寺西門前　助作（略花押）

同　　左吉（略花押）

歸雲院御納所様

（京都市南禪寺所藏文書）

とあり、まず前段の三か條では幕府法令そのものを掲げ、後段では門前にはキリシタンは一人も居ないこと、もしキリシタンを發見すればすぐに京都所司代に届けると述べています。

ところで、寺請証文の作成が本格化するのは1638年のことです。この年2月末日島原の亂で原城が落城しました。ほぼ半年後から幕府は本格的にキリシタン彈壓政策にのりだしました。この時キリシタン高札を掲示し、その摘發を指示し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ます。次にその史料を見てみましょう。

資料　5

キリシタン高札

一、伴天連の訴人　　銀子貳百枚

一、入滿の訴人　　同　　百枚

一、きりしたんの訴人　　同　　五拾枚又は三拾枚訴人によるべし

右訴人いたし候輩ハ、たとい同宗門たりというとも、宗旨をころび申出候においてハ、其科をゆるし、爲御褒美如書付可被下旨、仰出られ候、

以上、

寛永拾五年九月十三日

（永青文庫　熊本大學付屬図書館所藏）

この褒賞金の額は、例えば伴天連の場合の銀200枚は四人家族の生活費でほぼ20年分にあたる高い金額です。いるまんの場合は10年分、キリシタンの場合でも3～5年分にあたります。この高額な褒賞金のため多くのキリスト教徒が芋蔓式に捕らえ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密告制度の恐ろしさです。

この同じ時期に天領（幕府が直接支配した所）ではキリスト教徒以外の人々にも寺請証文の提出が義務づけられました。幕府が出した寺請証文の案文を見てみましょう。

資料　6

吉利支丹宗御改ニ付以一札申上候事

一、何の村のたれと申者は、

右の者ども、我等一宗のぼだい（菩提）檀那にてござ候こと實正

なり、もしキリシタン宗旨にて候と、わきより訴人ござ候わば、愚僧まかりいで、申しわくべく候、いずれの宗の寺

(藤澤市羽鳥　三觜博氏所藏文書)

幕府は代官を通じて天領の村の名主（庄屋）にこのような案文を配布しています。これに對して名主はそれぞれの村の檀家名の提出を申し入れました。ほぼ1ヵ月後に提出されたのが次の史料です。

資料　7

吉利支丹御改めにつき一札申上候こと

羽鳥村

一、右（左）の者ども、われら一宗の菩提檀那にてござ候こと實正なり、もしきりしたん宗旨にて候と、わきより訴人ござ候わば、愚僧まかりいで申しわくべく候、寛永十五年寅ノ十月十六日

藤澤ちやうこうじ（常光寺）

佐右衛門
新左衛門
義左衛門
長右衛門
新兵衛
惣左衛門
助九郎

成瀬五左衛門殿

(藤澤市羽鳥　三觜博氏所藏文書)

東海道藤澤宿にある浄土宗常光寺は隣村の羽鳥村にいる檀家の佐右衛門以下七名がキリシタンでないことと身分保証をしています。宛先は代官成瀬五左衛門です。この時から日本人全員は近くの寺で寺請することを義務づけられました。しかしすぐにこの寺請証文を梃子（てこ）として檀家制度が確立しかと言えば必ずし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あまりにも急速な宗教政策の展開により、寺請証文を作成するべき寺がまだ存在していない地域もありました。現存する史料で全國各地の寺院の開創年代をみてみますと、1640年代から1660年代にかけて開創された寺院は全体の約70％を占めています。つまり寺請証文が義務づけられたことにより、檀家の側が寺を開創し、そこに住職を定住させる動きが盛んになりました。そのことからこの20年間に寺請証文を作成する寺が續々と建立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d.　第四段階は1660年代になります。1664年幕府は全國の大名に對してそれぞれの藩に宗門奉行（寺社奉行）の設置を求め、キリシタン統制をより強化しました。1665年「宗旨人別改帳」（戸籍）の作成を命じました。その折寺院住職に對してそれぞれの檀家の名前の上に、寺の印鑑を押印することを命じています。その後「宗旨人別改帳」を作成する度に寺の押印は續けられました。

つまり寺院がこの戸籍業務に關わるようになってから、寺院は檀家を完全に掌握することが出來るようになりました。現在も續いている檀家制度は1660～1670年代に確立した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

4. 幕府宗教行政の転換と寺側の対応

1615年寺院法度以來本末制度が本山の決定・本末帳の作成によって確立し、本寺が末寺を掌握し、触頭を通じて幕府の法令が貫徹されるようになり、宗派單位の封建的支配体制が出來上がり、僧侶の階級も形成され、本末制度は確固たるものになりました。これを梃子にして寺院は檀家から経濟的な收奪を行う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ところがこのことが幕藩領主の年貢收奪機構を脅かす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ため幕府はこれまでの仏教保護政策の手直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それが次に述べる諸宗寺院法度の制定です。

a　諸宗寺院法度の制定

1665年7月11日、幕府は全宗派に統一した内容で諸宗寺院法度を布達します。一つは將軍判物9か條、もう一つは老中連署狀5か條です。つぎにそれをみてみましょう。

資料　8

將軍判物　諸宗寺院法度

定

一、諸宗の法式は、あい亂すべからず、もし不行儀の輩これあらばきっと沙汰に及ぶべきこと、

一、一宗の法式を存ぜざる僧侶は、寺院住持とすべからざること、
付、新義をたてて奇怪之法を説くべからざること、

一、本末の規式これを亂すべからず、たとえ本寺たりといえども、末寺に對して理不盡の沙汰あるべからざること

一、檀越の輩は何寺たりといえども、その心にまかすべし、僧侶方よりあい爭うべからず、

一、徒党を結び、闘争を企て、不似合の事業すべからざること、
一、國法に背くの輩到來の節、その届あるにおいては、異儀なく返すべきこと、
一、寺院仏閣修復の時、美麗に及ぶべからざること、
　付、仏閣懈怠なく掃除申しつくべきこと、
一、寺領一切これを賣買すべからず、幷質物に入るべからざること、
一、由緒なき者、弟子の望みあるといえども、みだりに出家せしむべからず、もしよんどころなき子細これあらば、その所の領主・代官へあい斷り、その意にまかすべきこと、右の條々、諸宗ともにこれを堅く守るべし、このほか先判の條數いよいよこれにあい背くべからず、もし違背においては、科の輕重に従いこれを沙汰すべし、猶下知狀に載するものなり、
　寛文五年七月十一日
（『御触書寛保集成』　117412）

① それぞれの宗派の儀式・作法を確實に守るように强調しています。
② 自分の宗派の儀式・作法を知らない者は住職にしてはいけない、と宗派性を强く押し出しています。
③ 本寺末寺の關係ではこれまで本寺の權限が强化されていましたが、ここでは部分的ながら末寺の權限をみとめています。
④ 寺と檀家との關係については、これまでは寺の方が優位でしたが、ここでは檀家側に寺の選擇權を与えています。これは大きな変化です。
⑤ 末寺が結束して本寺に抵抗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ます。
⑥ この箇條は守護不入權を否定したものです。中世以來犯罪人・浮浪人が寺に驅け込みその罪を逃れていましたが、江戸時代においてはこれを認めないとしたことです。
⑦ 寺の堂塔・伽藍を大きくしたり、華美にすることを禁じています。
⑧ 寺領の賣買・質入を禁止した條文です。
⑨ 僧侶の削減を図った條文です。出家の希望があった場合その地域の領主・代官の許可を義務づけています。

さらに最後にはこれまでの寺院法度と異なり、罰則を設けています。
次に資料2をみてみましょう。

資料　9
老中連署狀
　條々
一、僧侶の衣体その分限に応じ、これを着すべきこと、幷仏事作善の儀式檀那これを望むといえども、相応に輕くすべきこと、
一、檀方建立の由諸これある寺院の儀は、その檀那のはからいの條と

して、本寺より相談をとげ、その意にまかすべく候こと、
一、金銀をもって、後住の契約をいたすべからざること、
一、在家を借り、仏壇をかまえ、利用に求むべからざること、
一、他人はもちろん、親類のよしみこれありといえども、寺院坊舎に女人これをかかえおくべからず、但有來妻帯は各別たること、
右の條々これあい守るべし、もし違犯においては、科の輕重により御沙汰あるむね、仰せにより執達くだんの如し
寛文五年七月十一日

大和守（久世廣之）
美濃守（稻葉正則）
豊後守（阿部忠秋）
雅樂頭（酒井忠清）
（『御触書寛保集成』　117413）

① 僧侶の衣体、つまり衣の色や材質は僧階に応じて着用すること、仏事・供養は檀家の望みがあってもなるべく簡単にする事、
② 有力な檀家が建立した寺院はその檀家の意見を聞き、本寺と相談して住職を決める事、
③ 次の住職の契約を金銀で決めてはいけない事、
④ 在家を借りてそこへ仏壇を置き、寺と同様の仏事をしてはいけない事、
⑤ 僧侶は原則として妻帯を禁止されていましたので、知人の女性は当然のことながら、親類の女性も寺に住まわせてはいけない、ただし妻帯を認められていた一向宗と修験は特別でした。

これも將軍判物とおなじく罰則をもうけています。

寺社奉行はそれぞれの寺院にこの法度を布達した時、すべての寺から「請書」を提出させています。つまりこの條文を寺が確實に讀んだことを確認するためです。

次に内容についてみてみましょう。この二つの法令では当面の問題について規定していますが、その特色を擧げてみますと、第1に宗派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僧侶の階級による衣の色を規定しています。第2には、本末制度についてはむしろ末寺の權利を擁護しています。第3には、寺と檀家の關係では檀家に比重をかけ、檀家が寺を選擇する權利を与えています。第4に、守護不入權を否定し、寺の境内や寺領といえども、領主の權力が及ぶとしています。第5に、当時の史料をみますと、寺には庫裏姥（くりうば）・洗濯婆（せんたくばばあ）・坊守（ぼうもり）などの名称の女性がおり、實際には僧侶と夫婦關係を結んでいる例が多く見られます。幕府は五戒の一つである「不邪淫戒」に触れるので当然のことながら女性との同居を禁止しています。例外として妻帯がみ

とめられていたのは一向宗・修驗だけです。第6に僧侶株・寺株の賣買禁止、また寺領の賣買・質入も禁止しています。

寺請制度の實施により急激に多くの寺院や僧侶が輩出しました。このため幕府はその削減を図るとともに、寺院の経濟的收奪を極力抑えることに專念している様子がうかがえます。

以上のように、諸宗寺院法度は1615年の德川家康の法度とは內容が違ってきている事がわかります。この段階から幕府はこれまでの寺院保護政策から寺院統制政策にその內容を大きくかえてきています。また個々の箇條をみますと、寺院僧侶の實態を細かく分析しその力を抑えることに努力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幕府の宗教政策の轉換を絶好の機會と捉え、幾つかの藩の大名たちは寺院彈壓政策を斷行しています。例えば水戶藩（茨城縣）主德川光圀や岡山藩（岡山縣）主池田光政はそれぞれ領內の約60%の寺院を破却し、僧侶を追放し、僧侶から農民に身分を変えさせています。

b 寺院側の對応と葬式仏教

江戶時代中期になり寺請制度が强化されると、寺と檀家の關係は固定され檀家制度が確立しました。民衆の葬祭は檀那寺で行うことが決められ、その寺から離檀することは出來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な形態を葬式仏教とよんでいます。

一方檀那寺の側では本來は古代中國の十王信仰からはじまったとされる十仏事を寺の行事に取り込み、さらに十三仏事・十五仏事と增加して民衆の生活に定着さ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

中世後期までは十王信仰は主として武士階級の行事でした。十仏事は中國の「十王経」で說かれた仏事で、初七日・二七日・三七日・四七日・五七日・六七日・七七日・百か日・一周忌・三年忌の十回でした。

江戶時代になり檀家制度が確立しますと、これを庶民にも適用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さらに七年忌・十三年忌・三十三年忌が加えられ、十三仏事として定着しました。その後1700年頃になると、十七年忌・二十五年忌が付け加えられ、十五仏事になりました。十五仏事のそれぞれの忌日には本尊が割り当てられました。特に十五仏事は先祖崇拜の行事として寺と檀家を結ぶパイプの役割をはたしました。また親戚の者がこの法事や供養會に參加することで家族共同体の絆を確認する機會でもありました。

寺院は民衆に十五仏事を强制することにより葬式法要で経濟的收入を安定させ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一方民衆は寺からの收奪を受けても、その寺から離れ別の寺へ移ることは出來ませんでした。それは幕府が離檀（寺から離れること）を禁止した法令

をだしていたからです。また民衆にとっては寺請証文を寺の住職が書かなければ、キリシタンのレッテルを貼られ、村落内で生活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です。江戸時代においては民衆は信仰を選択する権利はありませんでした。日本人は全て仏教徒といわれていますが、日本人にとっての寺の存在は葬式法要を行う場所という認識しかなく、仏教そのものへの信仰はありませんでした。

1700年以降になると、寺院は庶民に墓石の作製を義務付け、先祖崇拝を強調し、十五仏事を強制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又一方では『近世往生伝』をはじめとする『本尊靈驗記』・『本尊利益記』などを刊行し、現世での倫理的な生活が來世での極樂往生を保証するなどとの説話を、民衆に説教する場合に強調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又寺での法要のおり、地獄極樂の様子を繪で解説し、生前の生活や寺への奉仕などが極樂へ行く條件と、強調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を「繪解き」といい、繪解き専門の僧侶が數多く輩出されました。

江戸時代中期以降の民衆の生活の中へわかりやすい仏教の教義を説きながら寺への奉仕を義務付けていきました。

근세불교의 성립과 단가(檀家)제도

圭室文雄

目 次

머리말
1. 사원법도
2. 본말제도
3. 단가제도
4. 바쿠후 종교 행정의 전환과 사원의 대응

머리말

근세불교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크게 나누어 네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사원법도(寺院法度)로, 이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원을 통제할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둘째는 본말제도(本末制度)다. 이는 바쿠후가 사원법도 가운데서 각 종파의 본사를 정하고 그 본사 아래에 각 종파의 절을 말사로 편성한 것이다. 내용은 교단의 통제를 의미하고 있고, 사원 내부의 계급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셋째는 단가제도(檀家制度)다. 기독교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사원에 의한 단가의 지배 관계이다.

넷째는 바쿠후 종교 행정의 전환과 사원 측의 대응이다. 바쿠후는 이때까지 기독교 탄압을 위해 사원 보호 정책을 취해 왔지만 단가에 대한 사원의 힘이 매우 강해지자 이 단계에서 단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한편 사원 측은 장식법요(葬式法要)를 축으로 민중 통제를 꾀한다.

1. 사원법도

第1表 寺院法度

	西暦	月	日	宛先宗派·寺院名	国名	県名	宗派名	条数	法度布達者
1	1601	5	21	高野山	紀伊	和歌山	真言宗	5	徳川家康
2	1602	6	2	大樹寺	三河	静岡	浄土宗	5	徳川家康
3	1608	8	8	比叡山	近江	滋賀	天台宗	7	徳川家康
4	1608	10	4	成菩提院	〃	〃	〃	7	徳川家康
5	1609	5	1	園城寺	〃	〃	〃		徳川秀忠
6	1609	5	1	聖護院	山城	京都	〃		徳川秀忠
7	1609	8	28	東寺	〃	〃	真言宗	3	徳川家康
8	1609	8	28	醍醐寺	〃	〃	〃	3	徳川家康
9	1609	8	28	高野山衆徒	紀伊	和歌山	〃	3	徳川家康
10	1609	8	28	関東古義真言宗			〃	9	徳川家康
11	1609	8	29	大山寺	相模	神奈川	〃	3	徳川家康
12	1609	11	21	東寺	山城	京都	〃		徳川秀忠
13	1609	11	21	高野山衆徒	紀伊	和歌山	〃		徳川秀忠
14	1610	閏2	21	石山寺	近江	滋賀	〃	5	板倉勝重·円光寺元佶
15	1610	4	20	金剛峰寺	紀伊	和歌山	〃	5	徳川家康
16	1610	5	1	戸隠山	信濃	長野	天台宗	5	徳川家康
17	1610	9	27	興福寺	大和	奈良		3	徳川家康
18	1610	10	5	長谷寺	〃	〃	真言宗	3	徳川家康
19	1613	2	28	関東天台宗(喜多院)	武蔵	埼玉	天台宗	8	徳川家康
20	1613	2	28	〃	〃	〃	〃	7	徳川秀忠
21	1613	2	28	慈恩寺	〃	〃	〃	3	徳川家康
22	1613	2	28	中道院	〃	〃	〃	3	徳川家康
23	1613	2	28	千妙寺	常陸	茨城	〃	3	徳川家康
24	1613	2	28	薬王院	〃	〃	〃	3	徳川家康
25	1613	3	13	浅草寺	武蔵	東京	〃	3	徳川家康
26	1613	4	10	智積院	山城	京都	真言宗	5	徳川家康
27	1613	5	21	聖護院	〃	〃	天台宗		徳川家康
28	1613	5	21	三宝院	〃	〃	真言宗		徳川家康
29	1613	6	6	聖護院	〃	〃	天台宗		徳川家康
30	1613	6	6	三宝院	〃	〃	真言宗		徳川家康
31	1613	6	6	関東新義真言宗			〃	5	徳川家康
32	1613	6	6	〃			〃	5	徳川秀忠
33	1613	6	16	七大寺入院法度					徳川家康
34	1613	6	16	公家衆法度				5	徳川家康
35	1613	8	26	関東天台宗(喜多院)	武蔵	埼玉	天台宗	7	徳川家康
36	1614	3	13	大山寺西楽院	伯耆	鳥取	〃	5	徳川秀忠
37	1614	9	5	榛名山巌殿寺	上野	群馬	〃	3	徳川家康
38	1615	7	17	禁中並公家諸法度				17	徳川家康

39	1615	7		五山十刹諸法度			臨済宗	7	徳川家康
40	1615	7		大徳寺	山城	京都	〃	5	徳川家康
41	1615	7		妙心寺	〃	〃	〃	5	徳川家康
42	1615	7		真言宗			真言宗	10	徳川家康
43	1615	7		高野山衆徒	紀伊	和歌山	〃	5	徳川家康
44	1615	7		永平寺	越前	福井	曹洞宗	5	徳川家康
45	1615	7		総持寺	能登	石川	〃	5	徳川家康
46	1615	7		浄土宗			浄土宗	35	徳川家康
47	1615	7		浄土宗西山派			〃	9	徳川家康

注 : 出典は中村孝也『徳川家康文書の研究』

이 표에 나타난 것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사원법도는 세키가하라 전투 다음해인 1601년부터 1615년까지 15년간에 걸쳐 나왔다.

② 좀 더 상세히 보면 1608-1615년 8년간에 집중돼 있다.

③ 이 시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오사카 측)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대항하기 위해 기나이(畿內) 지역의 유력 사원 재건, 부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사카 측으로서는 유력 사원 승병의 군사력 동원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도쿠가와 측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을 봉쇄할 필요가 있었다.

④ 좀 더 상세하게 사원법도 표를 보면 사원법도가 나온 유력 사원이 있는 지역은 거의 기나이와 바쿠후의 측근인 간토(關東)에 한정되어 있다.

⑤ 사원법도의 제출자를 보면 최초에는 대사원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각각의 종파 단위의 통제로 변해 간다.

⑥ 사원법도의 수신인을 종파 단위로 보면 천태종, 진언종이 가장 많고 특히 천태종에서는 히에잔(比叡山) 延曆寺·간토 본사인 喜多院·千妙寺, 천태슈겐(본산파)의 중심인 聖護院, 진언종에서는 고야산(高野山) 金剛峰寺를 비롯해 東寺·長谷寺·智積院·醍醐寺와 진언슈겐(당산파)의 중심인 三寶院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⑦ 이 시기 나온 사원법도의 조항 수를 보면 1615년 정토종제법도 35개조가 가장 많고, 이어서 禁中並公家諸法度 17개조이다. 그 이외의 사원법도는 3-5개조가 많다.

⑧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원법도를 가장 많이 고시했다는 것을 법도 포달자 항목에서 지적할 수 있다.

⑨ 1615년 7월에 사원법도 고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해 도요토미 히데요

시를 멸망시키고 도쿠가와씨가 패권을 장악해 이로부터 많은 종파에 통제가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 중세적 특권의 박탈

사원이 중세에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막대한 사령(寺領)이다. 주로 외호자(스폰서)인 영주로부터 받은 것이었는데 대사원은 더 많은 사령(전답과 산림)을 모아 이를 빌려줌으로써 수입을 얻었다.

또 하나 큰 특권은 '수호불입권(守護不入權)'이다. 이것은 사원이 영주의 경내 출입을 거부하는 권리이며, 공적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원의 경내는 본래 승려의 수행의 장이므로 세속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원 측은 경내만이 아니라 사령에도 수호불입권을 확대해 나갔다. 이 때문에 범죄인, 부랑자들이 언제든 들어와 그 죄를 피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중세의 영주와 사원이 종종 분쟁이 일게 된다. 예를 들어 히에잔(比叡山)과 고야산(高野山)으로 전란에 패한 무사들이 도망친 것은 유명하다.

한편으로 대사원은 승병을 많이 보유하고 정치권력과 대결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많은 전국시대 다이묘도 대항할 수 없었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전국을 통일한 권력자들도 대사원과 대립 항쟁을 계속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일소하기 위해 검지(檢地: 토지조사)와 가타나가리(刀狩: 무기소지 금지 정책)를 사원에도 적용하고 사령을 삭감하는 것과 함께 수호불입권을 폐지했다. 정치권력의 통제에 복종시키는 것과 더불어 수만의 군세(승병)를 가지고 있는 대사원의 승병을 해산시키고 무기를 빼앗았다.

사원법도는 대사원이라 할지라도 바쿠후 권력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명확히 했다.

b. 각 종파 본사와 촉두사원의 결정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사원의 군사력, 경제력을 삭감하는 것과 더불어 본사(본산)를 각 종파에 각각 복수로 하고 그 종파적 권력이 하나의 본산에 집중하는 것을 배제했다. 또 각 종파의 본산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간토에도 본산을 신설하고 간토 본사로 동등한 권리를 주었다. 각 종의 본산 아래에는 촉두사원(觸頭寺院)을 지정했다. 촉두사원이란 바쿠후의 법령을 종파 내의 사원에 통지하는 사원이다. 종파에 따라서는 촉두사원이 에도에 없는 경우에 그 말사 가운데 에도에 있는 사

원에 촉두사원의 주지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다.

각 종의 본산은 앞에서 보았듯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등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거의 빼앗기고 수학 도장으로서만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쿠후 권력을 배경으로 가진 촉두사원이 그 종파의 본산보다 종파 내에서 더 큰 정치력을 가지게 되었다.

c. 승려의 승격제도

사원법도에서는 각 종파의 사원 주지에게 승려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종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에 90일간씩 합계 180일간 본산이나 각 지역의 유력 사원에서 수학·수행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했다. 이러한 수학·수행을 25-30년간 계속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주지의 자격을 주었다. 그 후에도 수학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매년 180일간 수학하면 승계(승려의 계급)가 올라간다. 그 승계에 상당하는 사격(寺格)이 높은 절로 이전해 간다. 그리고 최고의 영예로서 각 종파의 본산 주지 한 사람만이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은 쇼군의 승인을 얻어 천황이 하사하였다. 이에 대해 본산 주지의 다음 지위는 황의(황색 옷)를 입는 것이 허용되고, 전주가(傳奏家)인 공가(公家)로부터 건네받는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황의 이하는 매관제(賣官制)로 되었다. 승려의 지위는 상위 승계는 천황가가, 이어서 전주가인 공가가, 다음으로 낮은 승계는 문적사원(門跡寺院)이 팔게 된다. 이 결과 천황과 교토의 공가, 문적사원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 또한 교토 거리에는 승계를 구하려는 많은 승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다. 교토 니시진(西陣)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만들어 팔아 융성을 이루었다. 메이지 2년(1869년) 천황이 도쿄로 옮겨가고 나서부터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교토의 공가와 문적사원, 특히 초닌(町人)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d. 민간 종교인의 배제

사원법도가 제정되고 각 종파의 본산, 촉두가 정해져 종파 조직이 확립되자 중세 이래 사미(沙彌), 성(聖), 또는 야마부시(山伏)라고 불리던 절을 갖지 않은 민간 종교인들은 불교 교단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예를 들어 '정토종제법도' 35개조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 그 모습을 살펴보자.

① 새로운 절의 건립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② 속인의 집을 빌려 불단을 설치하고 사원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③ 여러 나라와 지역을 돌아다니는 수행승이 그 지역 다이묘의 허락 없이 함부로 포교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승려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도 수행자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주어 신자가 되게 하거나 본래 승려가 사제 관계를 맺은 혈맥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

결국 앞서 서술한 것처럼 30년 가까이 엄격한 수학·수행을 하고 승려 자격을 얻은 사람과 민간 종교인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 사원법도의 특징

사원법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각 종파 내의 대립 항쟁 시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령을 준 시기에 고시되었지만 각 종 본산에 대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고시된 것은 1615년 7월이 처음이었다. 오사카 전투가 끝나고 먼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을 댄 것은 유력 사원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법도의 기초자로 南禪寺의 金地院崇傳을 기용했다.

이때 바쿠후가 사원법도를 낸 것은 5산10찰제산법도 7개조, 大德寺제법도 5개조, 妙心寺제법도 5개조, 진언종제법도 10개조, 고야산중도법도 5개조, 永平寺제법도 5개조, 總持寺제법도 5개조, 정토종제법도 35개조, 정토종서산파제법도 9개조다. 이외의 종파에서는 이미 천태종은 1608년에 비예산법도 7개조, 1613년 관동천태종제법도 8개조가 나와 있다. 그러나 1615년까지는 일향종, 시종, 일련종에는 법도가 나오지 않았다.

1615년 7월 사원법도의 내용에서 공통되는 것은 각 종 본산의 권한을 강화한 것,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 조직을 성립시킨 것, 승위·승관의 승격을 엄격히 한 것, 수호불입권 등 중세 사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배제한 것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5산10찰제산제법도 중에서 '남선사는 진보라색 옷, 천룡사는 연보라색 옷, 그 외 교토·가마쿠라의 5산은 황색 옷'이라고 규정하고 진보라색 옷은 임제종 남선사에만 한정해, 전 종파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격의 절임을 밝혔다. 다른 종의 본산 주지에게도 보라색 옷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천룡사에 준한 것으로 연보라색 옷 외에는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5산파의 교토 5산·가마쿠라 5산의 절은 황색 옷으로 정해, 그 계급 차별을 명확히 했다. 이상과 같이 사원법도에 의해 임제종의 5산·10찰·제산이 에도시대에도 관사(官寺)적 성격을 지니

고 그 정점이 남선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f. 사원법도의 효과와 한계

사원법도 제정에 따라 불교 각 종파는 바쿠후의 조직 하에 편입되고, 각 종파 교단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극히 억눌러졌다. 교단 내부의 계급 관계도 명확하게 정해지고 교단 내의 분쟁 역시 바쿠후의 손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다.

한편 이때 사원법도의 수신인이 되었던 큰 사원이 각 종의 본산이 되고 교단 내부에서 이 절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바쿠후 권력에 저항하는 종교는 철저하게 탄압되고, 사원이 중세 이래 가지고 있던 수호불입권은 부정되었다. 대사원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전답과 산림은 검지에 의해 대부분 박탈되었고 힘을 잃은 사원은 바쿠후의 하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사원법도의 한계를 지적하면, 첫째로 사원법도의 초안이 각 종 본산 주지들이 제출한 것에 金地院崇傳이 가필 교정을 해 쇼군이 그것을 고시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말사에 대한 본산 측의 요구만이 많이 포함되었다. 둘째로는 모두 종파 단위의 법도로 되어 있어 불교 전 종파 사원에 대해 통일된 법도의 내용이 아니다. 바쿠후가 전 종파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법도를 낸 것은 50년 후인 1665년의 일이다. 셋째로, 종파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일련종, 일향종, 시종에는 이 단계까지는 법도가 나오지 않았다. 넷째로, 법도 기초자인 金地院崇傳이 승려였기 때문에 철저한 처벌을 수반하는 법령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앞서 서술한 대로 남선사의 지위가 전국 사원의 정점이 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2. 본말제도

a. 법령으로 보는 본말제도

본말제도란 사원의 본산과 말사의 관계를 계급제도화한 것이다. 사원법도 가운데서 본말제도에 관한 기사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말사는 본사의 법도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1612년 5월 28일 '조동종 법도')

말사로서 본사의 하지(下知)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1613년 2월 28일 '관동천태종제법도')

본사의 허가 없이 말사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1613년 5월 21일 '관동신의진언종법도')

일본 조동종의 말사는 지금까지와 같이 종조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1615년 7월 '영평사제법도')

매년 행해지는 개산(開山)·이대기(二代忌)의 법요에 加賀(이시가와현) 能登(이시가와현) 越中(도야마현) 3개 국의 제 말사는 반드시 본산으로 참배할 것(1615년 7월 '총지사제법도')

여기에서 본사의 권한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사로부터의 법도·하지(명령)·가훈(종파 내의 규칙) 등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특히 본산이 말사의 주지 인사권을 가지고 게다가 본산의 개산기·이대기 등 때에는 말사는 빠짐없이 본산에 모여 법요에 참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산의 의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본산과 말사의 계급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사원본말장(寺院本末帳)을 작성한 이유다.

b. 사원본말장의 작성

전국적으로 본산을 정점으로 하는 사원본말장(寺院本末帳)이 작성된 것은 1632~1633년의 일이다. 이 시기 바쿠후 측에 남은 사원본말장은 현재 국립 공문서관 내 각 문고에 남아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표로 게재한다.

第2表 1632年~1633年 諸宗寺院本末帳目録

	年号	月	日	書名	宗派	冊数
1	1632	9	5	五山之目録	臨済宗	1
2	1632	11	9	浄土宗諸寺之帳	浄土宗	1
3	1632	11	9	浄土宗増上寺末寺帳	浄土宗	1
4	1632	11	24	常陸之正宗寺末寺書上	臨済宗	1
5	1633	1	19	法花宗諸寺目録	日蓮宗	1
6	1633	1	28	本隆寺之帳	日蓮宗	1
7	1633	2	11	京都本国寺末寺帳	日蓮宗	1
8	1633	2	20	遠州奥山方広寺輪番所本末帳	臨済宗	1
9	1633	2	21	鎌倉宝戒寺末寺書上	天台宗	1
10	1633	2	21	三州嵩山正宗寺末寺帳	臨済宗	1

11	1633	2		関東真言宗古義本末帳	真言宗	1
12	1633	3	1	時宗藤沢遊行末寺帳	時宗	1
13	1633	3	12	北京泉涌寺本末帳	真言律宗	1
14	1633	3	14	正法山妙心禅寺末寺並末々帳	臨済宗	1
15	1633	5	2	相州宝泉寺帳	曹洞宗	1
16	1633	5	16	関東真言宗新義本末帳	真言宗	1
17	1633	5	16	〃	真言宗	1
18	1633	5		曹洞宗通幻派本末記上	曹洞宗	1
19	1633	5		〃 下	曹洞宗	1
20	1633	5		竜穏寺本末帳	曹洞宗	1
21	1633	6	12	相州鎌倉建長寺末寺帳	臨済宗	1
22	1633	6	12	鎌倉寿福・浄智・浄妙末寺帳	臨済宗	1
23	1633	11	26	寂光寺末寺記録	日蓮宗	1
24	1633	11	28	京本満寺末寺帳	日蓮宗	1
25	1633	11	28	妙満寺末寺帳	日蓮宗	1
26	1633	11	28	上京妙覚寺諸末寺覚	日蓮宗	1
27	1633	11	28	京頂妙寺末寺帳	日蓮宗	1
28	1633	11		洛陽法華宗本禅寺末寺帳	日蓮宗	1
29	1633	11		洛陽本能寺末寺帳	日蓮宗	1
30	1633	12	1	京妙顕寺末寺帳	日蓮宗	1
31	1633	12	1	京妙法寺末寺帳	日蓮宗	1
32	1633	12	3	洛陽二条寺町要法寺末寺帳	日蓮宗	1
33	1633	12		立本寺諸末寺之帳	日蓮宗	1
34	1633			武州竜淵寺帳	曹洞宗	1
35		10	1	妙泉寺寺領書付	日蓮宗	1
36		11		寿福寺御寄進領並末寺書立	臨済宗	1
37				中峯派水戸之内清音寺末寺書上	臨済宗	1
38				五山出世之様子書物	臨済宗	1
39				曹洞宗末寺帳(遠江・駿河・三河・伊豆)	曹洞宗	1
40				遠州曹洞宗小末寺帳	曹洞宗	1
41				駿州曹洞宗小末寺帳	曹洞宗	1
42				妙蓮寺末寺帳	日蓮宗	1
43				京本法寺末寺帳	日蓮宗	1
44	1684	5	25	入目録上 (寛永之諸宗末寺帳目録)		1
45	1684	5	25	入目録下 (〃)		1

注　史料は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所蔵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간에이(寛永)의 '제종말사장'으로 불리는 것은 1-43번까지이다. 44와 45는 1684년에 작성된 '간에이 제종말사장'의 목록이므로 전체 43책이 된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1632년에 본산에서 바쿠후에 제출한 것은 정토종 2권과 임제종 2권 총 4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모두 9월 이후이다. 이에 비해

많은 본말장은 1633년 제출된 것을 알 수 있다. 1633년과 연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30권, 월만 기재된 것이 2권, 연월일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7권이지만 이를 기재 형식으로 보면 1633년에 포함해도 좋다고 생각되므로 이것을 더하면 1633년분은 합계 39권이 된다. 이것은 전체의 약 9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종파별로 책 수를 살펴보면 전체 43권 중 일련종이 17권으로 단연 많고, 이어서 임제종 10권, 조동종 8권, 진언종과 진언종율종 각 4권씩, 정토종 2권, 천태종과 시종은 각각 1권씩이다.

일련종이 특히 많은 것은 1630년 종단을 양분하는 논쟁이 전개된 때문이다. 이것을 신치타이론(身池對論)이라고 부른다. '신(身)'은 야마나시현의 身延山 久遠寺, '지(池)'는 도쿄도의 池上本門寺를 가리킨다. 일련종의 양 본산이 쇼군 도쿠가와 히데노부 부인의 崇源院 장식법요가 도쿄도 시바(芝)에 있는 정토종 增上寺에서 거행되는데 참가해야 하느냐를 두고 에도 바쿠후 로주(老中: 쇼군 직속으로 정무를 총괄하고 다이묘를 감독하는 직책)들 앞에서 시비를 논쟁했다. 久遠寺는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本門寺는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논거는 '종조 니치렌(日蓮)은 법화경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주(國主)라 하더라도 불수불시(不受不施)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불수불시란 '보시를 베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사고방식이다. 논쟁에 패한 일련종 불수불시파 본문사 주지 日樹는 이나(나가노현)로 추방되었다. 그 후 바쿠후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일련종 불수불시파를 금지했다. 그 2-3년 후에 제출된 본말장이기 때문에 바쿠후는 일련종에 대해서는 불수불시파 사원 및 그 승려의 상세한 기재를 명해 철저하게 추적을 단행했다. 이러한 배경이 일련종 본말장이 많은 것과 관련이 된다. 특히 교토의 일련종 사원 내, 묘각사가 불수불시파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교토의 본말장이 많이 작성되었다.

한편 身延山 久遠寺는 이 기회에 전국 총본산의 지위를 확고하게 한다.

이때의 본말장에서 큰 종파로 현재 사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일향종이다. 천태종 역시 겨우 4개 사원만이 기재했고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으로 사원본말장에 나타난 종파 단위의 분포를 살펴보자. 이 표는 국립 공문서관 내 각문고 소장 제종말사장 43권을 집계한 것이다. 이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원의 총수는 12080개 절이다. 표에 대해 설명한다.

第3表 寺院本末帳にみる宗派単位の分布

	宗派	九州	四国	中国	近畿	北陸	東海中部	関東	東北	松前	不記	不詳	合計	%
1	天台宗							4					4	0.03
2	古義真言宗						57	871					928	7.68
3	新義真言宗					276	30	2325	69				2700	22.35
4	真言律宗				12		1	4					17	0.1
5	浄土宗						1	451	45		91	13	601	4.98
6	時宗	15	1	10	18	24	42	130	35				275	2.28
7	臨済宗	57	23	80	76	38	918	557	4		167		1920	15.89
8	曹洞宗			1	5	1	1207	2089	54		12	2	3371	27.91
9	日蓮宗	60	20	284	256	302	464	841	20	4		13	2264	18.74
	合計	132	44	375	367	641	2720	7272	227	4	270	28	12080	
	%	1.09	0.36	3.1	3.04	5.31	22.52	60.2	1.88	0.03	2.24	0.23		

注 史料は寛永9～10年（1632～1633）『諸宗寺院本末帳』（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所蔵）

첫째로 종파별로 검토해 보면 이때 본말장이 작성된 것은 천태종, 고의진언종, 신의진언종, 진언율종, 정토종, 시종, 임제종, 조동종, 일련종 등 9개 종파이다. 이 사원 수가 당시 존재했던 사원 수의 몇 분의 일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령 조동종의 경우 1747년의 '사원본말장'과 비교하면 간에이의 제종말사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원 수는 19%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쿠후 측의 사료에 1630년대까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이것뿐이다. 이 단계에서 본말장을 제출하지 않은 주요한 종파의 하나는 일향종이다. 렌뇨(蓮如) 이래 호쿠리쿠(北陸), 도카이(東海), 기나이(畿內)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향종만으로도 전체 12080개 사원을 훨씬 웃도는 숫자로 추정된다. 또 4개 절만 기재되어 있는 천태종의 경우도 1786년 '천태종본말장'에 의하면 약 1만 개 사원의 말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간에이의 제종말사장은 한계가 있는데 종파별로 좀 더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천태종에서는 가마쿠라의 寶戒寺가 제출했는데 사가미(相模國, 지금의 가나가와현 일대)의 말사 3개 사를 기록하고 있다. 천태종의 본산격인 비예산 연력사 및 간토의 본산인 川越의 喜多院 등으로부터 제출된 것은 남아 있지 않다.

고의진언종은 928개 사로, 현존하는 것은 간토·도카이 지방의 사원 외에는 기재가 없다.

신의진언종은 사원 총수 2700개 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관동진언종신의본말장'이라는 표제에 있듯이 기재되어 있는 사원의 분포 지역은 간토가 중심

이고 호쿠리쿠 · 도호쿠 · (東北) · 도카이 순으로 되어 있다.

진언율종에서는 교토 泉涌寺뿐으로 겨우 17개 사에 지나지 않는다.

정토종은 '淨土宗諸寺之帳'과 '淨土宗增上寺末寺帳' 2권인데 그 내용은 표제와 같이 간토의 기재가 중심이다.

시종은 '시종 후지사와 遊行末寺帳' 한 권뿐으로 시종 12파의 내유행파(內遊行派)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말사는 전국 39개 국에 분포되어 있다.

임제종은 가마쿠라 建長寺 · 교토 妙心寺 · 도토우미(遠江, 시즈오카현) 方廣寺 · 미카와(三河, 아이치현) 正宗寺 · 5산10찰제산 · 히타치(常陸, 이바라키현) 正宗寺 · 히타치 淸音寺 · 가마쿠라 壽福寺 · 淨智寺 · 淨妙寺 등의 본말장이다. 이 표에 나타난 한 임제종의 敎線은 전국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묘심사의 말사가 49개 국에 분포하고, 또 수는 적지만 5산 · 10찰 · 제산이 60개 국에 분포하여 있기 때문이다.

조동종의 말사는 무쓰(陸奧, 아오모리 · 이와테)국에 54개 사 정도 존재하지만 표에 보이는 것처럼 도카이 · 추부(中部) · 간토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일련종은 교토 16본산이 모두 본말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기나이 및 그 주변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는데 역시 많은 것은 간토 지방이다.

다음으로 전 종파를 지역적으로 보면 사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간토 지방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한다. 2위는 도카이 지방으로 전체의 22.52%를 차지한다. 이 두 지역을 합하면 약 83%에 달한다. 이로부터 간에이의 본말장은 에도를 중심으로 한 이 두 지역의 본사격인 사원이 본말장 제출에 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각 종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3. 단가제도

단가제도는 절의 경영을 단가가 떠받치는 제도이다. 일본인 전원이 불교도로서 절의 단가에 편입된 것은 1640-1660년 무렵의 일이다. 단가제도가 성립하기까지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a. 제1단계는 1550년경이다. 우리 선조들은 1550년경부터 이세(伊勢) 참궁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세 참궁에는 같은 촌락의 동료와 지인들이 동행했다.

사람들은 이세 참궁을 마치면 그 후 고야산과 나라·교토·오사카로 발을 넓혀 명소의 유적을 견학했다. 특히 고야산에서는 산상의 가람과 안에 있는 절에 참배하고 숙방(宿防: 참배자가 묵는 절의 숙사)에 머물렀다. 숙방에서는 아침 근행 때 돌아가신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보리를 공양했다. 고야산의 숙방에는 당시 묵었던 사람의 숙장(등산장)과 보리 공양을 한 때의 기록 '日牌·月牌帳'(닛파이·갓파이초)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서민의 계명(법명), 성씨명, 현주소, 참배자와의 관계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특히 서민의 계명이 자주 보이는 것은 1550-1570년 무렵부터다. 이 시기의 계명은 종파를 불문하고 '2자 계명'이다. 이로부터 우리 선조는 절과 관계가 있고 절의 주지로부터 계명을 지어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단가제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절과 단가의 느슨한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세 참궁 때 친족의 계명을 위패에서 베껴 써서 지참하고 고야산에서 공양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닛파이·갓파이초에서 보면 우리 선조의 많은 사람이 이미 1550년대에는 대부분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료는 고야산의 숙방(탑두)에 많이 남아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절에서 장례식을 행하고 주지에게 계명을 받고 절과 단가의 관계를 맺은 것은 1550년 무렵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b. 제2단계는 1614년이다. 전년인 1613년 12월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돌연 '伴天連(바테렌: 가톨릭 신부) 추방령'을 내린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는 전국의 다이묘에게 명을 내려 영내의 기독교도를 체포해 불교로 개종시키고 '轉吉利支丹寺請証文'(크리스천이 절에 제출하는 개종 증서)을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까운 사원의 단가가 될 것을 강제했다. 결국 이 단계에서 기독교도는 사원의 사청증문(寺請証文)을 받고 그 절의 단가가 되지 않으면 신분이 보증되지 않았다. 아래에 규슈 오구라(小倉)한에서 실제로 제출된 '轉吉利支丹寺請証文'을 소개한다. 오구라한(부젠豊前국 8개 군과 붕고豊後국 2개 군=현재의 후쿠오카현 일부와 오이타현 일부)은 이 시기 약 40만 석의 수확량을 가지고 있었고 한슈(藩主)는 호소카와 다다오키(細川忠興)였다.

'轉吉利支丹寺請証文'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는 轉吉利支丹(크리스천에서 개종한 사람) 본인의 증서, 둘째는 마을 관리의 증서, 셋째는 절 주지의 증서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증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자료 1>
케이쵸慶長 19년(1614년) 오구라한 轉吉利支丹寺請証文
① 轉吉利支丹 본인의 증서 형식

<자료 2>
② 마을 관리의 증서 형식

<자료 3>
③ 절 주지의 증서 형식

자료 1의 본인 증서는 嶋田村 고우에몬 본인이 지금까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이번 종파 변경에 의해 크리스천에서 개종하여 일향종 正行寺의 단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 때문에 보증인을 내세워 별지로 본인의 신분을 보증 받았다는 것, 만일 크리스천으로 되돌아갈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서약하는 문장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출처는 오구라한 관리이다.

자료 2의 마을 관리의 증서는 ①의 사료에서 별지로 있던 것이다. 문장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이 마을의 농민 두 명이 고우에몬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다. 제출한 곳은 마찬가지다.

자료 3은 절 주지의 증서 형식이다. 붕고국 速見郡 淺見村의 兵吉와 浜脇村 新十郎이 크리스천을 그만두고 2월 9일 浜脇村 宗福寺의 단가가 되었다는 것,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宗福寺 주지 玄香이 그 신분을 보증한다는 것, 만일 다른 곳에서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주지를 처벌해도 좋다는 것, 그 뒤에 서약서를 붙여 신불에게 맹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출처는 역시 오구라한 관리다.

이상과 같이 오구라한은 영내의 轉吉利支丹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3통의 증서를 작성했다. 이 무렵 오구라한에서 체포된 크리스천은 204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증서는 전국 각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이러한 기독교도 탄압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도 신분보증을 하는 사람은 절의 주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독교도 이외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절과 단가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c. 제3단계는 1635년경부터다. 바쿠후는 이 해에 寺社奉行(사원을 관장하는 행정관료)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종교 통제를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도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사청증문이 작성되었다. 교토 南禪寺 문전 증서의 예를 살펴본다.

<자료 4>
南禪寺 西門前 住人 吉利支丹 改請狀

우선 앞 3개 조항에서는 바쿠후의 법령을 싣고, 후단에서는 문전에는 크리스천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만일 크리스천을 발견하면 즉시 교토 所司代로 신고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사청증문의 작성이 본격화된 것은 1638년의 일이다. 이 해 2월 말일 시마바라의 난으로 하라성이 함락되었다. 약 반년 후부터 바쿠후는 본격적인 크리스천 탄압 정책에 나섰다. 이 때 크리스천 방문을 게시하고 그 적발을 지시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그 사료를 살펴보자.

<자료 5>
크리스천 방문
一, 伴天連(바테렌: 신부)을 고소하는 자 은자 이백 매
一, 入滿(이루만: 가톨릭이 일본에서 선교할 때 바테렌의 다음 가는 선교사. 이루마옹)을 고소하는 자 은자 백 매
一, 크리스천을 고소하는 자 은자 50매 또는 30매 고소인에 따라 지급

포상금의 액수는 가령 바테렌(신부)의 경우 은 200매는 4인 가족의 거의 20년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이루만(선교사)의 경우는 10년분, 기독교도의 경우에도 3-5년분에 해당한다. 이 고액 포상금 때문에 많은 기독교도가 연달아 검거되었다. 밀고 제도의 무서움을 말해주는 예이다.

같은 시기 천령(天領: 바쿠후가 직접 지배한 곳)에서는 기독교도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사청증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바쿠후가 낸 사청증문의 문안을 살펴보자.

<자료 6>

바쿠후는 지방관을 통해 천령의 촌의 우두머리에게 이러한 문안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촌락의 우두머리는 각각의 촌의 단가 이름을 제출했다. 약 1개월 뒤에 제출된 것이 아래 사료이다.

<자료 7>

도카이도 후지사와주쿠에 있는 정토종 常光寺는 인근 마을인 羽鳥村에 사는 단가 사우에몬 이하 7명이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신분 보증을 하고 있다. 제출처는 지방관인 成瀬五左衛門이다. 이때부터 일본인 전원이 가까운 절에서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증서를 지레로 단가제도가 확립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너무 급속한 종교 정책의 전개에 의해 사청증문을 작성해야 할 절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 현존하는 사료로 전국 각지 사원의 개창 연대를 살펴보면 1640년대부터 1660년대에 걸쳐 개창된 사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결국 사청증문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가가 절을 개창하고 거기에 주지를 정주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사청증문을 작성하는 절이 속속 건립되었다.

d. 제4단계는 1660년대다. 1664년 바쿠후는 전국의 다이묘에 대해 각각의 한에 종문봉행(사사봉행)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기독교도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1665년 '宗旨人別改帳'(호적) 작성을 명했다. 그때 사원 주지에 대해 각각의 단가의 이름 위에 절의 인감을 찍을 것을 명령한다. 그 후 '종지인별개장'을 작성할 때 압인이 계속되었다.

결국 사원이 호적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부터 사원은 단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단가제도는 1660-1670년대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바쿠후 종교 행정의 전환과 사원의 대응

1615년 사원법도 이래 본말제도가 본산의 결정, 본말장 작성에 의해 확립되고, 본사가 말사를 장악하고 촉두를 통해 바쿠후의 법령이 관철되어 종파 단위의 봉

건적 지배체제가 완성되자 승려의 계급이 형성되고 본말제도는 확고해졌다. 이것을 지레로 하여 사원은 단가로부터 경제적인 수탈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바쿠한(幕藩) 영주의 연공 수탈 기구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바쿠후는 지금까지의 불교 보호 정책을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의 제정이다.

a.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의 제정

1665년 7월 11일 바쿠후는 전 종파에 통일된 내용으로 제종사원법도를 고시한다. 하나는 쇼군 판물(判物) 9개조, 또 하나는 로주 연서장(連署狀) 5개조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8>

쇼군 판물 제종사원법도

① 각각의 종파의 의식, 예법을 확실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자기 종파의 의식, 예법을 모르는 자는 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종파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③ 본사 말사의 관계에서는 당시까지 본사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말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④ 사원과 단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까지는 사원이 우위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단가 측에 사원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이다.

⑤ 말사가 결속하여 본사에 저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⑥ 이 조항은 수호불입권을 부정한 것이다. 중세 이래 범죄인, 부랑인이 절로 들어가 죄를 피했는데 에도시대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⑦ 절의 당탑, 가람을 크게 한다거나 호화롭게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⑧ 사령의 매매, 전당 잡히는 것을 금지한 조문이다.

⑨ 승려의 삭감을 꾀한 조문이다. 출가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지역의 영주, 지방관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사원법도와 달리 벌칙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를 살펴보자.

<자료 9>

로주 연서장

① 승려의 의체, 곧 의복의 색깔과 재질은 승려의 계급에 따라 착용할 것. 불사와 공양은 단가의 희망이 있더라도 가급적 간단히 할 것.

② 유력한 단가가 건립한 사원은 그 단가의 의견을 듣고 본사와 상담하여 주지를 정한다.

③ 다음 주지의 계약을 금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④ 재가(在家)를 빌려 그곳에 불단을 설치하고 절과 같은 불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

⑤ 승려는 원칙으로 아내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아는 여성은 물론 친척 여성이라도 절에 살아서는 안 된다. 단, 취처를 인정한 일향종과 슈겐(修驗)은 특별한 경우로 했다.

이것도 역시 벌칙을 두고 있다.

사사봉행은 각각의 사원에 이 법도를 고시했을 때 모든 절로부터 '청서請書'를 제출하도록 했다. 곧 이 조문을 절이 확실히 보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이 두 법령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들어보면 첫째, 종파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승려의 계급에 따라 의복 색깔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말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사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셋째, 절과 단가의 관계에서는 단가에 비중을 두고 단가에 절을 선택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 수호불입권을 부정하고 절의 경내와 사령 모두 영주의 권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당시의 사료를 보면 절에는 부엌일이나 세탁을 하는 여자 등이 있었고 실제로는 승려와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바쿠후는 오계의 하나인 '불사음계(不邪淫戒)'에 저촉되므로 당연히 여성과의 동거를 금지했다. 예외로서 취처를 인정한 것은 일향종, 슈겐뿐이다. 여섯째, 승려주, 사주(寺株)의 매매 금지, 사령의 매매 및 저당 잡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청제도 실시에 의해 급격하게 많은 사원과 승려가 배출되었다. 이 때문에 바쿠후가 그 삭감을 꾀함과 더불어 사원의 경제적 수탈을 적극적으로 억누르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종사원법도는 1615년 나온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법도와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바쿠후는 그때까지의 사원 보호 정책에서 사원 통제 정책으로 내용을 크게 바꾸었다. 또 개개 조항을 보면 사원 승려

의 실태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그 힘을 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바쿠후의 종교 정책의 전환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몇몇 한의 다이묘들은 사원 탄압 정책을 단행한다. 예를 들면 미토한(이바라키현)의 主德川光圀과 오카야마한(오카야마현) 主池田光政은 각각 영내에서 약 60%의 사원을 없애고 승려를 추방하고 승려에서 농민으로 신분을 바꾸게 했다.

b. 사원 측의 대응과 장식 불교

에도시대 중기 사청(寺請)제도가 강화되자 절과 단가의 관계는 고정되어 단가제도가 확립되었다. 민중의 장제(葬祭)는 단나사(단가사)에서 행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그 절에서 이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형태를 장식(葬式)불교라고 부른다.

한편 단가사 측에서는 본래는 고대 중국의 시왕신앙에서 비롯된 십불사(十佛事)를 절의 행사로 포함시키고 나아가서는 13불사, 15불사로 늘려 민중의 생활에 정착시켰다.

중세 후기까지 시왕신앙은 주로 무사 계급의 행사였다. 십불사는 중국의 '시왕경'에서 설한 불사로 초칠일, 이칠일, 삼칠일, 사칠일, 오칠일, 육칠일, 칠칠일, 백일, 일주기, 3주기의 열 번이었다.

에도시대가 되어 단가제도가 확립되자 이것을 서민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다. 더욱이 7년기, 13년기, 33년기를 더해 13불사로 정착되었다. 그 후 1700년경이 되면 17년기, 25년기가 추가되어 15불사가 된다. 15불사 각각의 기일에는 본존이 배당되었다. 특히 15불사는 조상 숭배 행사로서 절과 단가를 결속하는 파이프의 역할을 했다. 또 친척이 이 법사와 공양회에 참가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사원은 민중에게 15불사를 강제함으로써 장식법요로 경제적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편 민중은 절로부터 수탈당하면서도 그 절을 떠나 다른 절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것은 바쿠후가 이단(절에서 떠나는 것)을 금지한 법령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민중들로서는 절의 주지가 사청증문을 써주지 않으면 기독교도라는 딱지가 붙어 촌락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에도시대에 민중은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일본인은 모두 불교도라고 하지만 일본인에게 절의 존재는 장식법요를 행하는 장소라는 인식만 있었을 뿐 불교 자체에 대한 신앙은 없었다.

1700년 이후가 되자 사원은 서민에게 묘석 제작을 의무화하고 조상숭배를 강조

하면서 15불사를 강제했다. 한편으로는 <근세왕생전近世往生傳>을 비롯해 <본존영험기本尊靈驗期> <본존이익기本尊利益期> 등을 간행하고 현세에서의 윤리적인 생활이 내세에서의 극락왕생을 보증한다는 등의 설화를 민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 절에서 법요를 할 때 지옥 극락의 모습을 그림으로 해설하고 생전의 생활과 절에 대한 봉사 등이 극락으로 가는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을 '에토키'라고 하며 수많은 에토키 전문 승려가 배출되었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 민중의 생활 속으로 알기 쉬운 불교 교의를 설파하면서 절에 대한 봉사를 의무화해 나갔다.

(번역: 종교학과 박범석)

주제어: 근세불교, 사원법도, 본말제도, 단가제도, 막부